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서면심사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이 적기에 이루어져 보다 빨리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자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를 “법 제6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본인 이 책임질 사유없이”로 한다.

동조제3호 중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사람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의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로 한다.

동조제4호 중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를 “못한 사람이 사망한 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이나 병상일지 등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어”로 한다.
동조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

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4조의7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제7호 6급3항 7310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로 하고, 동호 7급 7315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을 “엄지손가락을 제외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호·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1. 법 제6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책임질 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현행과 같음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3.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의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4.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법제6조의4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이나 병상일지 등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어 법 제6조의4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설 >	5.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

< 신 설 >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 신 설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 현행과 같음 > ⑥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5438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연 락 처	(044) 202 - 5838